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연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848
----------	-------

발의연월일 : 2026. 1. 5.

발 의 자 : 정연욱 · 신성범 · 서명옥
최보운 · 박성민 · 서지영
김기웅 · 이성권 · 박상웅
박수민 · 이종배 · 엄태영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화’를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공개되는 OTT 영화는 법률상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되고 있음.

그런데 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화 또한 국민과 산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영화로 인식되고 있으며, 주요 국제영화제에서도 OTT 공개작인 경쟁부문에 초청되는 등 사회적 통념과 법적 개념 간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영화산업의 제작·유통 구조가 영화관 중심에서 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복합 유통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유통매체가 아닌 콘텐츠 자체의 특성과 서사적 완결성을 중심으로 한 정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화의 정의를 개정하여 OTT 영화도 법률상 영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인식과 법적 체계를 일치시키고 영상 콘텐츠 산업 전반에 법적 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영화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영화노사정협의회,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근로조건의 명시 등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의11 신설).

다. 기금 사업에 사용되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하도록 함(안 제25제1항 후단 신설).

라. 영화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영화만을 제작·배급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단서 신설).

마. 상영등급 분류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 전으로 명확히 하고, 비디오물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도 포함된다는 것을 밝히는 등 표현을 구체화함(안 제29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0조의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2호의2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을 “정보통신망을”로 한다.

1. “영화”라 함은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2장 제1절에 제3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1(적용범위) 제3조의2부터 제3조의10까지의 규정은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금이 사용되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2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영화만을 제작·배급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상영 전까지”를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에서의 상영 전까지”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디오물을”을 “비디오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를 포함한다)을”로, “공급하기”를 “시청에 제공하기”로 한다.

제50조의2제1항 본문 중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를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를 포함한다)의”로,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을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기”로 한다.

제50조의5제1항 중 “제공하는”을 “시청에 제공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1. “영화”라 함은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과 공중이 관람하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을 말한다.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12의2. “온라인비디오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비디오물을 말한다.	12의2. ----- 정보통신망을----- -----.

13. ~ 23. (생략)

<신 설>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
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 12. (생략)

② (생략)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영화업자가 되려는 자는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
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
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단서 신설>

13. ~ 23. (현행과 같음)

제3조의11(적용범위) 제3조의2부
터 제3조의10까지의 규정은 영
화상영관에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 한정하여 적용
한다.

제25조(기금의 용도) ① -----

----- . 이 경우 기금이
사용되는 영화는 영화상영관에
서 상영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
으로 한정한다.

1.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영화업자의 신고 등) ①

----- .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될 영화만을 제작·배급하
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 략)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상영 전까지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상물등급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상영등급을 분류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 ⑩ (생 략)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배급(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을 공급하기 전에 해당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상영등급분류) ① -----

-----영화상영관(비상설상영장을 포함한다)에서의 상영 전까지-----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50조(등급분류) ① 비디오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를 포함한다)을-----

-----시청에 제공하기-----

-----.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략)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는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그 온라인비디오물의 제공 전에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0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②·③ (생략)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온라인비디오물은 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공급 및 제공하는 범위에서 제5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50조의2(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① -----

-----시청에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시청에 제공되는 영화를 포함한다)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기-----
-----.

②·③ (현행과 같음)

제50조의5(자체등급분류의 효력) ① -----

-----시청에 제공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